

2025년 기술닥터사업 중기애로기술지원(1차)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산학연 보유 연구자원을 활용한 기업현장 기술애로 해결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자 추진 중인 기술닥터사업의 「중기애로기술지원(1차)」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. 2. 5.

경기도지사 · 경기테크노파크원장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목적: 현장애로기술지원 후 추가 심화지원을 통한 기업애로 해결

나. 주관기관: 경기테크노파크

다. 지원규모: 71개 과제, 14.2억원(과제당 2천만원 이내)

(단위: 건)

지역명	지원규모	1차 지원	2차 지원	지역명	지원규모	1차 지원	2차 지원
가평	1	1	-	안양	8	4	4
고양	4	2	2	양주	3	2	1
광명	2	1	1	양평	1	1	-
광주	2	1	1	여주	1	1	-
구리	1	1	-	연천	1	1	-
군포	4	2	2	오산	2	1	1
김포	5	3	2	용인	8	4	4
남양주	4	2	2	의왕	1	1	-
동두천	1	1	-	의정부	1	1	-
부천	3	2	1	이천	1	1	-
성남	11	6	5	파주	6	3	3
수원	2	1	1	평택	4	2	2
시흥	8	4	4	포천	5	3	2
안산	20	10	10	하남	2	1	1
안성	5	3	2	화성	10	5	5

※ 파란색 지역은 '25년 신규 참가지역, 2차는 4월 중 모집공고 예정(변경 가능)

2. 지원내용

- 가. 주요내용: 시제품제작, 공정개선 등 기술애로 해결 과제 지원
- 나. 과제기간: 협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
- 다. 지원금: 과제당 2천만원 이내(총 사업비 80% 이내, 현금 및 부가세 제외 기준)
- 라. 기업부담금: 총 사업비의 20% 이상(기업부담금 감면대상의 경우 15% 이상)

3. 신청기간 및 방법

- 가. 신청기간: 2025. 2. 5.(수) 09:00 ~ 2. 25.(화) 18:00
- 나. 신청방법: 기술닥터 홈페이지(tdofactor.gtp.or.kr) 접속 후 온라인 신청
 - 1) '중기애로기술지원 - 신청하기'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
 - 2) 시스템 내 제출서류 누락 시 별도 통보 없이 심사 제외

다.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1)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와 연관된 주제 선정 필수
- 2) 기술닥터와의 과제범위 협의
 - 기술닥터(전문가)의 지원을 통한 애로해결 포함 필수
 - 기술닥터와 지원 내용 및 지원 횟수 사전 협의 필수
- 3) 사업비 편성 시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
- 4) 사업비 편성 시 기업부담금 편성비율 준용
 - 기업부담금 편성 예시

[예시 1] - 일반기업

지원금(80%)	기업부담금(20%)	총 사업비(100%)
20,000,000원	5,000,000원	25,000,000원

[예시 2] - 기업부담금 감면기업

지원금(85%)	기업부담금(15%)	총 사업비(100%)
20,000,000원	3,530,000원	23,530,000원

라. 제출서류

1) 필수서류

제출서류	발급처
① 중기애로기술지원 사업계획서 1부	[붙임1] 서식
②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1부	[붙임2] 서식
③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(※ 검색년도: 2004년 ~ 현재, 유사도: 60% 기준)	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
④ 국세 완납증명서 1부	홈택스
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	위택스
⑥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(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	홈택스
⑦ 최근 연도 재무제표, 결산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과세 표준증명서 1부	홈택스

2) 해당 시 제출서류

- 법인등기부등본 1부(법인사업자)
-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1부(해당 시)
- 기업부담금 감면서류(해당 시 택1)

감면대상	증빙서류	발급처
① 사회적기업	사회적기업 인증서	고용노동부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② 여성기업	여성기업 확인서	중소벤처기업부, 한국여성경제인협회
③ 근로자 5인 이하	4대보험 가입자 명부 ※ 1인 사업자: 보험가입 조회화면(보험 미성립 화면) 캡처 제출	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
④ 장애인기업	장애인기업 확인서	정부24
⑤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	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	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

4. 신청자격 및 제한 사항

가. 신청자격 조건(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)

- 1) 중소 제조기업
- 2)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
- 3)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(2024년~신청일 기준 완료기업)

나. 신청자격 제한(제한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지원 불가)

- 1) 휴폐업 상태의 기업
- 2) 국세/지방세 미납 기업
- 3)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
- 4)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 받을 수 없는 기업
- 5) 중기예로기술지원 또는 상용화지원 기 수혜기업(수혜연도 무관)
- 6) 현재 유사과제를 통한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수혜받을 예정(확정)인 기업
- 7) 면세사업자

5. 선정평가 및 기준

가. 평가일정: 2025. 3. 13.(목) ~ 3. 19.(수) 예정

※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평가 대상기업에 별도 안내

나. 평가방법: 발표평가

- 1) 평균점수(최고, 최저점 제외)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
- 2) 협약포기 및 자격미달 기업 발생 시 예비순위 기업 선정 가능

다. 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내용
지원의 필요성 (20)	- 현장예로기술지원과의 연계성 - 지원의 필요성 - 지원의 시기적정성 등
목표의 명확성과 실현가능성 (35)	-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- 과업 참여인력의 적정성 - 기타 기업의 과업달성능력 등
추진방향의 명확성 및 적정성 (20)	- 추진체계의 합리성 - 과업내용의 기간적정성 및 명확성 -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
사업의 파급효과 (25)	- 매출 및 고용 기대효과 - 기타 사업의 파급효과 등

※ 가점사항 :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(2점)

6. 주의사항 등

- 가. 신청자의 착오 및 기재 오류로 인하여 정상적인 심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, 보완자료 미제출 시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- 나. 신청서 및 제출서류 상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, 지원금 환수, 사업 참여제한, 제재사실 공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다. 정보 기재오류, 연락불능, 일정 착오로 인한 심사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라. 중기애로과제 선정기업이 과제기간 중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관련지침에 따라 참여제한(최대 3년, 사업비 전액환수 등) 조치 될 수 있음
- 마. 중기애로과제 중 과제기간 내 자산성 물품 구입이 불가하나, 일부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기성품, 소프트웨어 등 과제에 필요한 사안일 경우 사업계획서에 물품 구입 필요성에 대해 명시해야 함
- 바.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닥터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, 사안에 따라서는 심의를 통해 결정함
- 사. 표준서식(사업계획서 양식 등)이 일부 개정되었으므로 변경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신청해야 함

7. 문의처

- 가. 문 의: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중기애로기술지원 담당자
- 나. 전 화: 031-500-3111, 3333
- 다. 이 메 일: sh2630@gtp.or.kr
- 라. 홈페이지: <http://tdoctor.gtp.or.kr>

8. 관련 규정 준수

가. 관련규정

- 1) 기술닥터사업 운영요령
- 2) 기술닥터사업 관리지침
- 3) 기술닥터사업 표준서식

나. 확인경로: 기술닥터 홈페이지(<http://tdoctor.gtp.or.kr>) > 알림마당 > 공지사항

- 붙임
1. 중기애로기술지원 신청서, 사업계획서(서식) 각 1부.
 2. 중기애로기술지원 참여확약서(서식) 1부.
 3.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(서식) 1부. 끝.